

의안번호	2212103
의 퇴 인	김소희의원
회 답 일	2025.11.5.
추 계 번호	25D4357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 등에게 학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경우, 교육영상 제작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시청 요청 (안 제6조제6항 신설)	29	-	-	-	-	29	6

주: 1.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시청 요청(안 제6조제6항 신설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

2.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로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영상 제작 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6항 (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) 신설	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신고 접수 시 해당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, 복지시설,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하고, 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제6항 (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로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영상 제작 사례를 활용하여 추계
 - 개정안에 따라 옥외집회 등을 신고한 주최자 등에게 학교, 복지시설,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교육영상 제작이 필요
 - 시청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
 - 경찰청은 마약 등 청소년 범죄가 다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청소년 대상 특화된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영상 제작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5%	5.1%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학교, 복지시설,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하여 옥외집회 주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며 영상은 제작 후 반복사용이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만 발생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교육영상 제작비용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
 - 유사사례인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영상에 소요된 비용(2025년 기준 2,800만원)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 등에 학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경우, 교육영상 제작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,900만원으로 추정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제작비용	29	-	-	-	-	2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로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영상 제작 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